#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94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성일종·백종헌·조은희

조 국・최수진・박덕흠

이종배 • 장동혁 • 고동진

유용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.

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연수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수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5조의2(연수시설의 설치・운
	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
	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
	연수시설을 설치・운영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연수시설의
	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